제2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염창동, 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8. 28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염창동, 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19년 8월 28일

수석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19 - 51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19년 8월 14일

라. 회부일자: 2019년 8월 21일

2. 제안이유

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기관인 **염창동 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**를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: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사업

○ 위탁기간: 5년

○ 위탁근거: 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제2항

○ 위탁예산: 총 1,192,217천원(국비 333,986천원, 시비 771,431천원, 구비 86,800천원)

나. 추진일정

○ 2019. 9~10월: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

○ 2019. 11월: 센터운영 실시

4. 참고사항

○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8조 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○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5조 ~ 제6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)

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~ 제21조의 2 (시설의 위탁)

○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8조 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○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 (다함께돌봄센터)

○「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란 조례」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5. 검토의견

○ 이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
○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지역 사회 참여와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아동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

에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가 필요하므로,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돌봄 수요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

○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○ 다만, 적정한 위탁체 선정, 철저한 준비와 지도·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붙임1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

□ 아동복지법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**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**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, 위임기관이 승인한 사업은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